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9차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후위기 대응정책 마련 등 〉

■ 연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952호)

2026. 3.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기후위기 대응정책 마련 등	3
※ 참고자료: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9
※ 참고자료: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10

I. 제안경위

2025년 12월 5일 염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부로 하여금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기후위기 대응은 단발적 논의가 아니라 정부 전체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을 관리해야 할 과제이나, 정부는 5년에 한번 수립하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 온실가스 감축 관련 범정부 추진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기마다 1회 이상 온실 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이행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 점검과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성과 점검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후단 신설).

III. 검토의견

1. 기후위기 대응정책 마련 등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마다 1회 이상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이행현황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도록 하고(안 제8조의2 신설),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공개하도록 하며(안 제9조제1항),

위원장은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대해 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8조의2(기후위기 대응정책의 마련)</u> <u>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마다 1회 이상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u>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122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u>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u>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② ~ ⑦ (생략) 제13조(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위원장은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u>하 “기후위기 대응정책”이라 한다)의 이행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정책 보고의 제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법률 제21122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 ----- -----<u>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과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이행현황</u>----- ----- -----<u>. 이 경우 위원장이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 ----- -----<u>. 이 경우 위원장이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u>

현행	개정안
② ~ ④ (생략)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舊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하 “위원회”)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매년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공개¹⁾하고 있으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공개²⁾하고 있음.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확인된 부진사항 및 그 개선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의 점검 방법 및 결과 보고서의 공개 절차, 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3조(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위원장은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시·군·구계획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2024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 점검개요

○ (대상) '24년 국가 전체 및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 최근 7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백만톤, '25.8월말 기준) >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잠정)	'24년(잠정)
순배출량	692.5	668.2	623.6	653.0	632.7	610.1	600.1
전환	276.2	255.3	225.2	237.9	236.3	224.1	212.9
산업	260.8	256.5	246.7	261.8	244.9	238.7	242.7
수송	96.2	99.0	94.2	97.1	95.8	95.1	94.6
건물	52.1	48.6	46.5	46.8	47.5	44.6	43.3
농축수산	24.7	25.0	25.6	25.4	25.1	24.5	24.1
폐기물	17.4	16.5	16.7	16.3	16.1	16.2	15.7
흡수원	-40.3	-37.7	-37.9	-37.8	-38.5	-38.5	-38.9

*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자료 확정에 장기간 소요(+21개월)되는 점을 감안,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GIR)에서 산정한 온실가스 잠정치를 토대로 배출량을 점검

○ (방법) 연도별 감축목표 부합여부 확인, 부진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여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 (절차)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발표('25.8) → 관련부처 주요통계 제출·취합('25.9~10) → 중간보고서 작성('25.10) → 전문위 점검('25.11) → 분과위 검토·점검 자문단 자문('25.11) → 탄소중립이행책임관회의('25.12) → 전체회의('25.12)

* 탄녹위 분과위원, 전문위원, 외부 점검자문단 등 126명이 점검에 참여

출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24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2025.12.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방법 및 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기본계획 2024년도 이행점검 개요]

□ 점검개요

- (대상) 국가 기본계획('23.4월) 82개 단위과제의 '24년 추진상황 및 성과
- (방법)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 개선·보완사항 등 결과보고서 작성
- (절차) 관계부처 실적 제출 → 전문위 점검 → 분과위 검토·점검자문단 자문 → 탄소중립이행책임관회의 → 총괄위 검토 → 전체회의
- * 전문위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위원을 위촉, 분과위 내 14개 위원회로 구성(167명)
 분과위 : 탄녹위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3개 위원회로 구성(35명)
 자문단 :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이해관계자(청년·시민단체 등)로 구성(15명)

< 이행점검 체계 >



◆ 전년 대비 변경사항

- ① (점검 체계화) 전문위에서 82개 단위과제 점검, 분과위에서 16개 부문별 검토
 * '24년은 이행점검단을 별도 구성하여, 16개 부문만 포괄적으로 검토
- ② (전문성 제고) 전문가를 대폭 확대하여 점검위원 보강('24. 73명 → '25. 189명)
- ③ (환류 강화) 탄소중립이행책임관 회의를 통해 결과 사전 공유 및 조치계획 제출

출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24년도 이행점검 결과”, 2025.11.

또한 현행법 제38조3)에 따라 정부는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 ① 정부는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후위기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제공·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대책(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제39조4)에서는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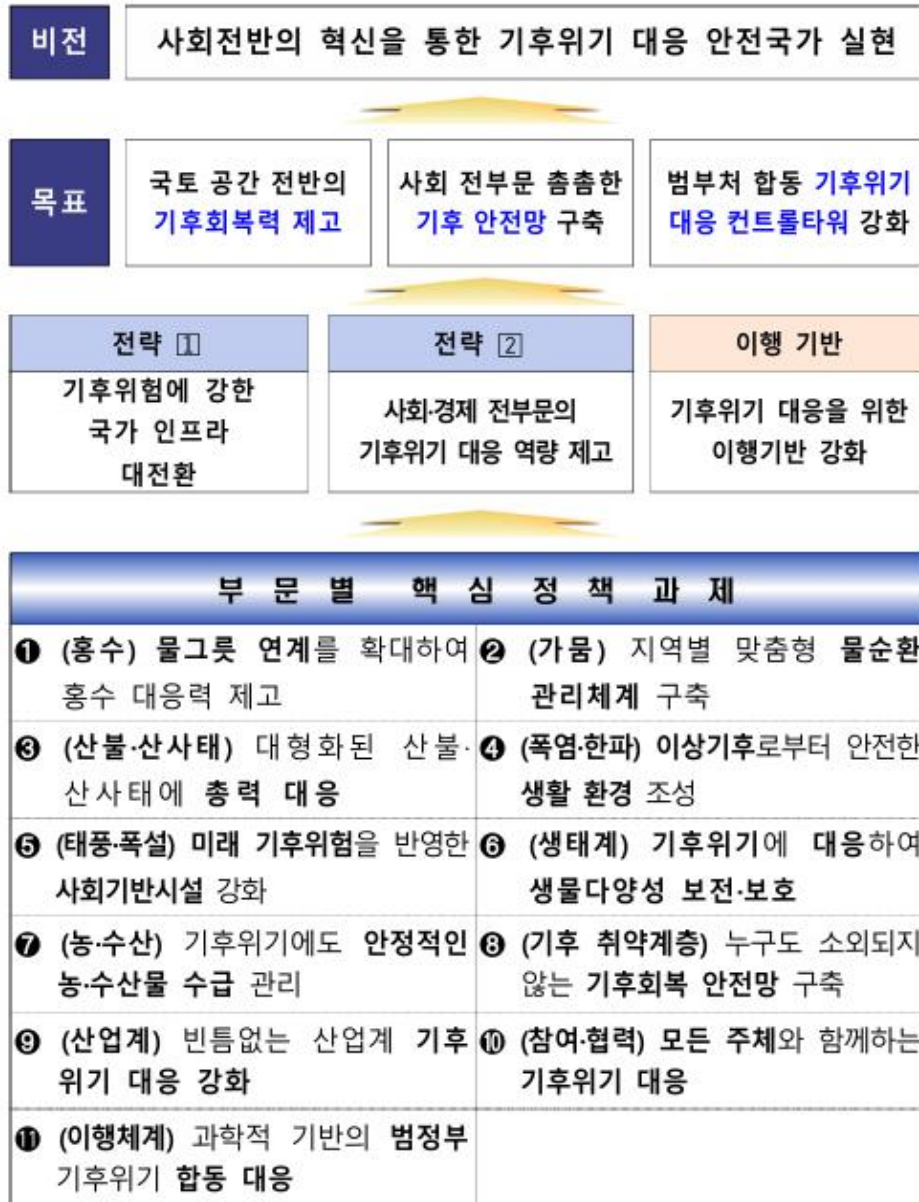
기후위기적응대책에는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 영향과 취약성 평가 및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

-
5.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세부 시행계획(이하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기후위기적응대책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자 등이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 ① 정부는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부문별 주요 적응대책 및 이행실적, 적응대책 관련 주요 우수사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확인된 부진사항 및 개선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정부는 제1항의 결과 보고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 체계도]



출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2025.12.

한편, 현행법상의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만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아니므로 범부처를 아우르는 정책 성과를 점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결과보고서 및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성과 결과보고서의 작성·공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각 부처가 소관 기후위기 대응정책 이행현황을 반기에 1번 이상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한 범정부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고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성과를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에 관한 것으로,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국가기본계획 및 기후위기적응대책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바,

절차·내용의 중복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본계획의 추진현황 보고 또는 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 상황 점검 주기를 반기에 1회로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국가기본계획·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개정안 비교]

국가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내용	개정안의 '기후위기 대응정책' 내용
1.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3.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 5.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 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7.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시책에 관한 사항 8.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1.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제공·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총리와 재정부, 과기부, 기후부, 산업부, 국토부 등 대부분의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⁵⁾에서 결과보고서의 심의를 거치므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추가하는 실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 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산림청장과 기상청장을 말한다.

익이 없다는 입장인바,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36

※ 참고자료: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 참고자료: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백만톤CO₂eq, 괄호안 값은 '18년 대비 감축률)

구분	부문	'18년	'24년	2035 NDC			
				△53%		△61%	
				배출량 (18比 감축률)	감축량 (24比)	배출량 (18比 감축률)	감축량 (24比)
순배출량		742.3	651.4	348.9	△302.5	289.5	△361.9
배출	전력	283.0	218.3	88.3 (△68.8%)	△130.0	70.0 (△75.3%)	△148.3
	산업	276.3	250.9	209.1 (△24.3%)	△41.8	190.6 (△31.0%)	△60.3
	건물	52.1	43.6	24.2 (△53.6%)	△19.4	22.8 (△56.2%)	△20.8
	수송	98.8	97.5	39.3 (△60.2%)	△58.2	36.8 (△62.8%)	△60.7
	냉매	23.1	35.0	27.4 (+18.6%)	△7.6	25.5 (+10.4%)	△9.5
	농축수산물	27.6	25.6	20.0 (△27.5%)	△5.6	19.5 (△29.3%)	△6.1
	폐기물	19.4	17.5	9.2 (△52.6%)	△8.3	9.0 (△53.6%)	△8.5
	탈루	3.7	3.2	2.6 (△29.7%)	△0.6	2.4 (△35.1%)	△0.8
	수소	0	0	8.1	+8.1	6.5	+6.5
흡수 및 제거	흡수원	-41.6	-40.2	-38.3	+1.9	-39.3	+0.9
	CCUS	0	0	-11.2	△11.2	-20.3	△20.3
	국제 감축	0	0	-29.8	△29.8	-34.0	△34.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